공고 제 49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5일

가정3동장 ㊞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숙	정 *숙 1963-09-14	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79번길 (가정동)	직권말소 2026-11-25